



제417회국회(임시회)
제1차 정무위원회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

< 60세 이상 보국수훈자에게 보훈영예수당 지급 >

■ 김희정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00933호)

2024. 8.

정 무 위 원 회

전 문 위 원 최 기 도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: 60세 이상 보국수훈자에게 보훈영예수당 지급 ...	2
※ 참고자료	9

I. 제안경위

1. 제안자 : 김희정의원 등 11인
2. 제안일 : 2024. 6. 25.
3. 회부일 : 2024. 6. 27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무공훈장을 받은 무공수훈자와 보국훈장을 받은 보국수훈자를 국가유공자로 규정하여 예우하고 있고, 그 중에서도 60세 이상 무공수훈자는 무공의 영예를 기리기 위해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음.

그런데 무공수훈자와 달리 보국수훈자의 경우에는 현행법에 수당과 관련한 규정이 없어 지자체 조례에 따라 보훈영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, 지자체마다 대상 및 금액 등 측면에서 차이가 있어 보국수훈자 사이에 형평성이 어긋나고 무공수훈자와 비교해서도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60세 이상 보국수훈자에게 보국의 영예를 기리기 위하여 보훈영예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예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1조제2항제3호의2 및 제16조의3 신설).

Ⅲ. 검토의견: 60세 이상 보국수훈자에게 보훈영예수당 지급

□ 개정안은 60세 이상 보국수훈자에게 보국의 영예를 기리기 위하여 보훈영예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임(안 제11조 등).

현행	개정안
제11조(보훈급여금의 종류) ① (생략)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3. (생략) <u><신설></u> 4. ~ 8. (생략) <u><신설></u>	제11조(보훈급여금의 종류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<u>3의2. 보훈영예수당</u> 4. ~ 8. (현행과 같음) <u>제16조의3(보훈영예수당) ① 60세 이상 보국수훈자에게는 보국의 영예를 기리기 위하여 보훈영예수당을 지급한다. 이 경우 60세 이상인 보국수훈자가 제4조 제1항제4호·제6호·제9호, 제73조 및 제74조(상이를 입은 사람만 해당한다)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대상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</u>

	<u>급대상 또는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보훈영예수당과 보상금·참전명예수당 중 어느 하나를 지급한다.</u> <u>② 보훈영예수당은 「상훈법」에 따른 보국훈장의 등급별로 구분하여 지급하되, 2개 이상의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중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1개의 보국훈장을 기준으로 한다.</u> <u>③ 보훈영예수당은 월액으로 하며, 그 지급액, 지급방법,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
<u>제16조의3</u> (6·25전몰군경자녀수당) (생략)	<u>제16조의4</u> (6·25전몰군경자녀수당) (현행 제16조의3과 같음)
<u>제16조의4</u> (4·19혁명공로수당) (생략)	<u>제16조의5</u> (4·19혁명공로수당) (현행 제16조의4와 같음)
제20조(보훈급여금의 지급정지) 보훈급여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사람이 「한국보훈복지의료	제20조(보훈급여금의 지급정지) - ----- -----

공단법」 제2조에 따른 한국보
훈복지의료공단(이하 “공단”이
라 한다)에서 운영하는 양로시
설이나 양육시설에서 국가의
부담으로 지원을 받고 있으면
그 지원을 받게 된 날이 속하
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지원
을 받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
하는 달까지는 보상금 중 대통
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수당
(무공영예수당은 제외한다)은
지급하지 아니한다.

제42조(진료) ① ~ ⑥ (생략)

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.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,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.

1. ~ 3. (생략)

4. 제16조의3제1항의 6·25전몰
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는 사

람 중 선순위자로서 75세 이상인 사람. 이 경우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이면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. ⑧ (생략)	----- -----. ----- -----. ⑧ (현행과 같음)
--	---

□ 현행법은 60세 이상 무공수훈자에게는 무공의 영예를 기리기 위하여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,¹⁾ 「국가유공자법」 제12조에 따른 전상군경, 공상군경 등 보상금의 지급대상²⁾, 「보훈보상자법」 제2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해부상군경³⁾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

- 1) 「국가유공자법」 제16조의2(무공영예수당) ① 60세 이상 무공수훈자에게는 무공의 영예를 기리기 위하여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한다. 이 경우 60세 이상인 무공수훈자가 제4조제1항제4호·제6호·제9호, 제73조 및 제74조(상이를 입은 사람만 해당한다)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대상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대상 또는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무공영예수당과 보상금·참전명예수당 중 어느 하나를 지급한다.
- ② 무공영예수당은 「상훈법」에 따른 무공훈장의 등급별로 구분하여 지급하되, 2개 이상의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중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1개의 무공훈장을 기준으로 한다.
- ③ 무공영예수당은 월액으로 하며, 그 지급액, 지급방법,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2) 보상금을 지급받는 전상군경(법 제4조제1항제4호), 공상군경(법 제4조제1항제6호), 6·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(법 제4조제1항제9호), 공상군경에 준하여 보상하는 6·18자유상이자(법 제73조), 전몰군경·전상군경·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고 보상하는 전투중사공무원 등(법 제74조)
- * 「국가유공자법」 제73조(6·18자유상이자에 대한 준용) 북한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3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포로가 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6·18자유상이자로 의결되면 공상군경에 준하여 보상한다.
1. 포로수용소에서 수용 중 대한민국을 지지하다가 북한을 지지하는 사람으로부터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
 2. 대한민국에 귀순할 목적으로 포로수용소를 탈출하는 과정에서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
- * 「국가유공자법」 제74조(전투중사공무원 등에 대한 보상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사망 또는 상이등급에 따라 전몰군경·전상군경·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고 보상한다.
1. 군사적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된 군무원이나 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과 상이를 입은 사람(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
 2. 정부의 승인을 받아 전투나 군 작전에 종군(從軍)하는 기자로서 그 종군 중 사망한 사람과 상이를 입은 사람
 3. 「전지근로동원법」(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46호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)에 따라 동원된 사람, 청년단원·향토방위대원·소방관·의용소방관·학도병, 그 밖의 애국단체원으로서 전투,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과 상이를 입은 사람
- 3) 「보훈보상자법」 제2조(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

다른 보상금의 지급대상 또는 「참전유공자법」에 따른 참전명예 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어느 하나를 본인의 선택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○ 현행법상 보국수훈자의 경우 국가유공자로 규정하여 예우는 하고 있으나, 무공수훈자와 달리 수당 관련한 규정이 없어 「국가유공자법」에 따른 별도의 수당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.

○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따라 보훈영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, 그 대상과 지급액이 각 지자체마다 차이가 발생하여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.⁴⁾

□ 개정안은 무공수훈자에게 지급되는 무공영예수당과 동일한 체계로 보훈영예수당 지급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한 보국수훈자에 대한 예우 수준을 높이려는 취지로 보이는데,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심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음.

○ 첫째,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의 원칙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수준과 연령을 고려하는 것인데,⁵⁾

상자, 그 유족 또는 가족(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)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.

1. 재해사망군경: 군인이나 경찰·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·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·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(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)

2. 재해부상군경: 군인이나 경찰·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·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·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(질병을 포함한다)를 입고 전역(퇴역·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하거나 퇴직(면직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(이하 “상이등급”이라 한다)으로 판정된 사람

4) 지자체가 지급되는 보훈명예수당은 월 20만원(강원도 영월군), 월 15만원(전라남도 여수시), 월 8만원(전라남도 보성군) 등 지자체별로 지급액의 차이가 있으며, 그 대상도 보국수훈자를 제외(충청북도 천안시)하거나 국가유공자에 대하여는 65세 이상에게만 지급(경상북도 경주시)하는 등 차이가 있음.

보국수훈자의 경우 대부분 재직기간이 33년 이상인 군인 및 군무원으로 보국훈장⁶⁾을 수여받은 사람인바, 전투 중 뚜렷한 무공을 세운 무공수훈자와 그 희생과 공헌을 유사하게 인정하여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보상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.

- 둘째, 보국수훈자로 등록될 경우 보상금이나 수당을 제외한 교육, 취업, 의료, 대부 등 다른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고, 이는 공상 및 순직공무원⁷⁾ 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데, 보국수훈자에 한정하여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경우 다른 유형의 국가유공자들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음.

< 대상별 보상금 및 수당 지급 현황 >

구 분	보상금 지급	수당 지급	보상금 및 수당 미지급
대상별	(본인) 전상군경, 공상군경, 재일학도의용군인, 4.19혁명 부상자, 특별공로상이자 (유족) 전몰군경, 순직군경, 4.19혁명사망자, 특별공로 순직자	무공수훈자, 참전 유공자, 4·19혁명 공로자	보국수훈자, 순직 공무원, 공상공무원

5) 「국가유공자법」 제7조(보상 원칙) ①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, 그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.

6) < 무공훈장 및 보국훈장 서훈 기준 >

무공훈장	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전투에 참가하거나 접전지역에서 적의 공격에 대응하는 등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으로 뚜렷한 무공을 세운 사람
보국훈장	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

7) 국민의 생명·재산 보호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거나 순직한 공무원

- 셋째,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은 한 개인이 보상금 및 여러 수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참전을 포함한 군 복무 등 공무수행을 하나의 원인으로 보아 보상금과 여러 수당 중 택일하도록 하고 있고, 이는 개정안에 따른 보훈영예수당의 지급도 마찬가지이나 무공수훈자 이면서 보국수훈자가 되는 경우 두 수당 간 병과를 금지하고는 있지 않고 있어 기존 보상체계와 부합하지 않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, 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 병과금지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.
- 참고로 국가보훈부에 따르면, 개정안에 따라 보훈영예수당이 신설되어 보국수훈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5년간 6,996억원(연평균 1,399억원)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음.⁸⁾
- 국가보훈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희생과 공헌을 기초로 보상의 정도를 정하는 보상 원칙 및 보상금·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닌 타 국가유공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.

문 의 처
02)6788-5112

8) [참고 2](10p), 월지급액을 (인헌)무공영예수당의 70%로 가정하여 추계함.

* 인헌은 무공훈장 훈격별 구분(태극, 을지, 충무, 화랑, 인헌) 중 5등급에 해당함

참고1 보국훈장 훈격결정 기준 및 보국수훈자 신분별 등록현황

☐ 보국훈장 훈격결정 기준(재직기간 33년 이상인 군인 및 군무원)

구 분	1등급 (통일장)	2등급 (국선장)	3등급 (천수장)	4등급 (삼일장)	5등급 (광복장)	비고
군 인	대장	중장	소장, 준장	영관급	위관급 이하	계급
군무원	-	-	1급	2~4급	5급 이하	직급

* '24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 발체

☐ 보국수훈자 신분별 등록현황('24. 6월 기준)

구 분	합 계	군인	군무원	공무원	기타
인 원(명)	41,990 (100%)	33,867 (80.7%)	7,291 (17.4%)	724 (1.7%)	108 (0.2%)

참고2

소요예산 추계자료

□ 개정안에 따른 추가소요 : 연평균 **1,399억원**(5년간 **6,996억원**)

구 분		2025년	2026년	2027년	2028년	2029년
인원 발생 (명)	1. 60세 이상 보국수훈자 인원	37,065	38,468	39,924	41,435	43,003
	2. 60세 이상 보상금 등 수령인원	4,893	5,078	5,270	5,469	5,676
소요 예산	A 연도별 보훈영예수당 대상인원(명) (인원발생, 1-2)	32,172	33,390	34,654	35,966	37,327
	B. 단가(천원, 월 기준) = 인헌무공훈장의 70%	336	336	336	336	336
	C. 소요예산(백만원) = A×B×12(월)	129,718	134,628	139,725	145,015	150,502

* (60세 이상 보국수훈자 인원) '21 ~ '23년 인원 증감률 3.8% 적용

** (60세 이상 보상금 등 수령인원) '24년 5월 기준 보상금 수령비율 13.2% 적용